

『구미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9년 4월 15일

나. 발 의 자 : 장미경, 강승수, 권재욱, 김재우, 박교상, 안주찬
양진오, 장세구 의원(8인)

다. 회부일자 : 2019년 4월 15일

라. 상정일자 : 2019년 5월 8일

제23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설명자 : 장 미 경 의원

나. 제안이유

-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와 경제적 발전으로 인한 핵가족화와 1인 가구 증가로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와 생명존중 의식이 부족하여 학대나 유기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육·관리되고 있어 생명에 대한 경시풍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이에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반려

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주민의 참여와 협력 및 소유자 등의 의무(안 제3조 ~ 제4조)
-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 반려문화 조성 및 지원(안 제6조 ~ 제7조)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 「지방자치법」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이 중 우

○ 본 「구미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은

-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반려
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 동물학대 및 유기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소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제정이 타당
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